

## 수 지 구



수신 수지구 신고체육시설 업 413개소 대표자 귀하 (경유)

제목 신고체육시설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

- 1. 귀 사업장의 번영을 기원합니다.
- 2. 체육진흥과-4115(2023. 4. 10.)호와 관련하여「아동복지법」제26조제3항에 의거 **아동학대**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,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3. 귀 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는 교육을 이수하신 후 교육 수료증을 <u>2023.12.22.(금)까지 제출</u>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

## □ 교육개요

- 가. 교육방법: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인터넷 강의 및 집합, 시청각교육(붙임1, 붙임2 참고)
- 나. 결과제출: 이메일(pyswith@korea.kr) 또는 우편(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, 수지구청 3층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)

현장방문 제출(12시~13시 제외,18시 내 방문요망)

- 다. 문의전화: 031-324-8053(수지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)
- 붙임 1.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.
  - 2.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1부. 끝.





주무관 **문화체육팀장 자치행정괴**장 **건결 2023. 9. 20. 박은주 박은주** 

협조자

시행 자치행정과-18463 (2023.09.20) 접수

우 1683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, 3층 자치행정과 (풍덕천동) / www.yongin.go.kr

전화번호 031-324-8053 팩스번호 031-324-8029 / pyswith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- 함께 만드는 미래, 용인 르네상스 -